

구미시 공영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공영장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공영장례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다. 공영장례의 업무대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와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운구료,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례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 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는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 하였는 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영장래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위 조례에 제정에 따른 비용증감액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지원함에 있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3,757천원 정도임

(집행액 : '20년 12,670천원, '21년 11,700천원, '22년 16,900천원)

4. 작성자

생활안정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장수홍

소 관 부 서		생활안정과
입 안 자	과 장	홍 순 관
	팀 장	장 영 희
	담 당 자	장 수 홍 (480-2762)